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특수교육 요구 반영 방안 (시각장애학교 사례)을 중심으로

이 덕 순*

광의초등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시각장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관계와 교과 및 교육활동 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5개국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해당 국가 및 주에서 선정된 5개 시각장애학교 교육과정으로 하였다. 분석 기준은 국가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서의 반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나 과목이 국가(주) 교육 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나, 학교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제시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모두 국가 수준 교육과정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면에서 그렇지 못한 한국의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편제와 운영은 별도의 교과 신설이나 편제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주제어 : 세계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시각장애학교

* 교신저자(shanhae@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정의 실체(實體)는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무엇을 위해 존립(存立)하며, 누구를 위해 구안되어야 하는가? 최근 반복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수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이와 함께 연동(聯動) 개정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속적인 개정을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번번이 겪어야 하는 사회공동의 과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된다.

장애 특성에 따른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그렇지 못한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교육과정 개정 동향으로 볼 때, 전자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그 해답이 있을 수 있고, 후자는 교육과정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교육내용’을 도외시하고 ‘교육방법’의 문제에 지나치게 천착(穿鑿)해 왔던 한국의 오래된 특수교육 경향성에 그 근간(根幹)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 개정된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2008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단위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등의 외부 상황에 따라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다.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체제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단위 학교로 하여금 여전히 해당 기준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조 내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의 반영은 근자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단위 학교의 노력과 특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구성 형태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상호 관련 속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란 교육 법규에 의거하여 고시된 국가 수준의 ‘기준’을 명시한 문서로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 구성의 주체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이 학교 교육과정은 다시 학급 교육과정이나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과정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개정 시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서 장애 특성에 따라 제기되는 교육적 요구들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인 ‘2008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을 했던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교육과정 내에서 이러한 교육 내용 및 활동을 편제하거나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이나 개선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의나 관심에 비해 실제 특수교육이 수행해야 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교육과정에 효율적으로 구성’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에 따른 개별적 특수한 요구를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볼 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특수학교에서 분리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배치환경에 상관없이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되,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주)에서 제시하는 필수 교과 교육과정 외에 보행훈련, 점자교육, 일상생활교육 등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주) 수준의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제시의 방법에는 총론 등을 통한 별도의 지침 제시 방식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도 있고, 일본처럼 별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추가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과(활동)인 ‘자립활동’ 등을 통해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는 국가도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1980년부터 이후 국가 교육과정을 제창해 온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정영근, 2006)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문서가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8)이 있으며, 일본은 문부과학성에서 제시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2008)이 있어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 정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로 ‘National Standards’ 가 있으며, 주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State Standards)로 ‘Curriculum Framework 또는 Curriculum Guidelines’ 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The National Curriculum’ 으로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in England. Key stages 1 and 2와 Handbook for secondary teachers in England. Key stages 3 and 4’ 가 있다. 또, 호주는 교육과정 체제에 있어서는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방

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1권 3호)

수준에서 ‘Key Learning Areas(KAL)’가 있으며, 정영근(2006)은 “호주 연방교육부는 최근까지 주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는 SBCD(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를 강조하며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문화가 토대를 이루고 있던 OECD의 주요국에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가 수준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 기준(curriculum standers)을 제창하고 있다(정영근, 2006).

특수교육이 장애 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실현해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때,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어서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요구를 교육과정에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는 것은 중요한 구성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장애 학생들의 추가적인 교육 요구를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는 연구는 앞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예컨대,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요구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구현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 정립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한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시각장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시각장애학교 사례)의 교과 및 교육활동 편제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5개국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해당 국가 및 주에서 선정된 5개 시각장애학교 교육과정으로 하였다. 이들 국가 중 일본은 한국과 같이 국가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며, 미국, 영국, 호주는 국가 교육과정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측면에서 선정되었다. 이 중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국,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각 주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미국, 호주의 경우에는 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해당 국가 및 주에서 시각장애학교 각 1개교의 학교 교육과정 사례를 선정하여 총 5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			시각장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2010년 검색 기준)	
국가명 (주명)	교육과정명	개발 (검색) 연도	국가명 (주명)	학교명
미국 (루이지애나 주)	Louisiana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미국 (루이지애나 주)	Louisiana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영국	National Curriculum	(2010)	영국	Royal School for the Blind
일본	초·중·고등부 학습지도요령,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	(2010)	일본	쯔쿠바 맹학교(쯔쿠바대학부속시각특별지원학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New South Wales Consolidated Acts	(2010)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St. Edmund's School
한국	특수학교 교육과정	2008	한국	S 맹학교

연구 방법은 국가(주) 교육과정의 경우는 대상 국가 및 주 교육과정 원문을 웹상으로 검색하여 발췌하고 기타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실을 인용 기술하고, 비교하여 설명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준거는 주요 교과와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기준은 국가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의 반영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에 속하지만,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주제를 포괄하는 폭넓은 비교와 분석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연구의 여건상 교육과정 문서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중도·중복장애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사례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II.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관계

교육과정 개정 정책이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가지는 국가의 경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 또한 교육 행정을 둘러싼 강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한 운영 형태를 보이는 반면, 교육과정 개정 정책에서 분권적인 특징을 보이는 국가의 경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자율적이고 느슨한 체제의 특징을 보인다(손민호, 2004).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든 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관계는 비교적 분권적인 형태를 보이는 반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거의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교육은 탈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주 자치정부가 교육에 책임을 지고 학교를 세워 주마다 다른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따라서 미국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보다는 주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집권화되어 운영·관리된다. 교육은 전적으로 주 정부의 책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수준에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틀 역시 개별 주 수준에서 결정한다(소경희 외, 2000).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 기준이 있어 이것이 주 전체의 교육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한편, 미국은 2002년 1월 연방의회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고 학교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하여 통과시

켰다. 그리고 장애 학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강조한 이 법을 각 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연간발전(Adequate Yearly Progress) 정도를 점검하며 철저한 지원 계획을 단위 학교에 실행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는 미국의 교육이 탈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편으로 연방 정부에서 정해진 정책이 일선 학교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와 학교의 관계가 유기적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Nation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정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수 기준, 교사 전문성 개발 기준, 평가 기준, 내용 기준, 교육 프로그램 기준, 교육 체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주의 내용 기준과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ramework)라고 할 수 있는 주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기준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교과별로 가르쳐야 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주 수준의 평가, 교육과정 체제 개발, 교수 자료의 평가를 위한 기초로 이용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각 주는 교육과정 편제 기준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가 교과와 시수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운영하는 자율적 운영 체제로 되어 있다(허경철 외, 2005a). 즉,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주 정부 수준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결정하고, 각 학교에서는 주 정부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성취기준을 토대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학생 평가 체제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에는 주에서 제시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소경희 외, 2000).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교과목과 시수가 확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없으며, 각 학교는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시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이미숙 외, 2008), 대개의 경우 학교나 교사, 학교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할 수 있다(소경희 외, 2000)”. 이는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 있으며, 학교와 교사는 주의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나 정책 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주에서 제시하는 교과 편제 기준을 보면, 필수 과목을 포함하는 기본 교육과정 외에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편성할 수 있는 보충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보면 한국처럼 모든 학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 수업 시수가 아니라 필수 시수는 최소화하고 권장 수업 시수 제시의 방법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1988년의 ‘교육개혁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최근 영국은 이 국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따라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교과목과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허경철 외, 2005a). 즉, 영국은 1980년대 이후 국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표방하며, 1988년 ‘교육개혁법’을 입법화하면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국의 학교에 대해 표준 교육과정(standard curriculum)을 요구하고 있다(Smith, 1991). 영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경우, 제목부터 ‘국가 교육과정: 영국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핸드북’으로 되어 있어 교육과정 해설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김진숙, 2006).

영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교과별 교육과정으로 발간되어 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영국의 초등 교사를 위한 핸드북(The National Curriculum: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in England. Key stages 1 and 2)’과 ‘국가 교육과정: 영국의 중등 교사를 위한 핸드북(The National Curriculum: Handbook for secondary teachers in England. Key stages 3 and 4)’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curriculum.qcda.gov.uk>, 2010).

영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각의 학교가 학생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학습과 경험을 포함해야 하는데,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배우고 성취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및 사회에서 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이성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교육과정,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경험, 책임감, 기회를 준비시켜 주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는 영국 국가 교육과정의 목적과 국가차원의 기본 구조(The national framework and purpos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안에 포함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 2008).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영국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위주로 운영되며, 과목별 편제나 운영 등은 각 학교에 대부분의 자율권을 주어 일임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제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는다(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 2008; 박순경 외, 2009).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사에게 많은 것을 일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과목별 수업시수도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는 영국의 교육이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즉, “영국의 교육은 중앙 정부, 지역교육청, 교회, 기타 단체,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이 교육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립학교의 재정 및 관련 행정, 교사의 임명, 평가 등에 대한 책임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운영위원회로 이양되고 있다(소경희 외, 2000).” 전통적으로 영국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일본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학습지도요령’이 있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학교, 농학교 및 기타 특수학교 등 모든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이 국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정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절대기준인 동시에 최저기준(문부과학성, 2009)”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교육에 대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기초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최저 기준’으로서 각 학교의 탄력적인 운영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허경철 외, 2005b). 특수학교의 경우 이 학습지도요령을 근거로 하여 한국의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특수교육의 성격 및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적용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계획으로서 각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의 편성 원칙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인 ‘학습지도요령’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을 위시해 각종 법규, 학교교육법시행규칙,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및 구시정촌(區市町村) 교육위원회의 기준, 지도·조언과 지역의 실태, 학교의 실태, 학생의 심신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장관과 교육위원회가 편성하는 교육과정을 기준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을 실천 교육과정이라 하기도 한다(문부과학성, 2009).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교과 수업의 주교재를 비롯하여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는 편이며, 문부성에는 학교 감독관이 있어서 초·중등학교가 문부성의 교육과정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는 학습지도요령이 많은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유사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니며 학교별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각각의 구별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초·중학교에 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소경희 외, 2000). 본 연구에서 서술한 다른 국가에 비해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호주

호주의 교육과정 운영은 각 주의 책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정은 주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손민호, 2004). 즉, 호주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위원회(Council of National Curriculum)에서 제안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각 주별로 운영된다(최홍원·성열관, 2009). 그러나 최근 호주의 각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은 보다 공통된 교육과정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책무성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즉, 1990년대 전후부터 시작된 연방 수준에서 국가 수준의 통일된 교육과정 체제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은 최근까지도 각 주의 교육과정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국가 공통 교육과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호주 국내의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 교육의 거의 모든 법적 권한이 국가 수준보다는 주 수준에 있고, 각 주마다 교육과정 개정 정책의 방식이나 관행이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각 주나 특별구의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으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 수준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일치해 나아가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손민호, 2004).

호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법 1990’ 법령과 연방정부 교육관련 장관들이 모여 합의한 공동 선언문의 형태로 존재한다. 최근의 선언으로는, 21세기 학교교육의 국가목표를 규정한 아틀레이드 선언(1999년 4월)과 호주 청소년을 위한 국가 교육목표를 정한 멜버른 선언(2008년 12월)이 있다. 이 ‘교육법 1990’ 과 두 선언들을 바탕으로 각 주 정부는 세부적인 교육과정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최근 호주 각 주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목표설정, 보다 명확한 학업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에 그 노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손민호, 2004).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호주의 각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역사적으로 주 수준에서, 그리고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바탕에서 하고 있다(김선, 2007). 그리고 학교는 주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의 실행에 필요한 연결고리로 활용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 활동 및 시간 운영의 범위가 비교적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다.

5. 한국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중앙집권형의 교육 시스템하에서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도 학교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성을 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소경희 등(2000)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전형적인 국가 수준의 중앙집권화된 교육과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발의, 연구, 개발,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 관련 기준과 지침, 교과서 제도, 시험 제도 등에 대한 최종 승인권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인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광복 이후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편제와 시간 배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학교 유형별,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일률적이고 고정된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 이어서, 결국 전국적으로 공통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제한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수한 학교’에 부여하는 자율성은 주로 시간배당 및 시간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교과 편제와 시간배당 및 시간운영 등에 대한 관련지침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Ⅲ.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교과 및 교육활동 비교: 시각장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주) 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중앙집권형의 교육과정 형태이거나, 국가(주)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고 분권적이어서 각 학교에 자율권을 많이 주는 형태 모두 일정 부분 국가(주)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학교에 부여하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은 경직된 형태를 가지기도 하고, 유연한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서의 반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나 과목이 국가(주) 교육과정에 편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교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제시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후자인 국가(주) 수준에서 제시하는 ‘학교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활용하여 학교나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학교에 부여하는 자율성은 교육과정 편제나 시간배당 및 시간운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편제와 시간배당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과 해당 국가(주) 시각장애학교들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편제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각 주가 교육과정 편제 기준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가 교과와 시수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율적 운영 체제로 되어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교과목과 시수가 확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없으며,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시수를 결정하고 있다(최홍원·성열관, 2009). 예컨대, 루이지애나 주 수준 교육과정 사례를 보면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장 수업 시수로 제시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많은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 주 학교행정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서(Louisiana Department of Education, 2008)’에 나타난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루이지애나 주 초·중학교 필수 과목별 시간 배당 기준

과 목	주당 권장 수업 시수(분) (* 표시는 필수 시수)			
	1, 2, 3학년	4, 5, 6학년	7, 8학년 (하루 6시간제)	7, 8학년 (하루 7시간제)
국어(영어) 사용능력	825	600	550	500
수학	300	300	275	250
과학과 사회	225			
과학		225	275	250
사회		225		
사회(7학년: 미국, 8학년: 루이지애나 지역)			275	250
외국어	150	150	150	150
체육	150*	150*	150*	150
건강, 음악, 미술공예	150*	150*	120*	250
계	1,800	1,800	1,795	1,800

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목은 국어(영어) 사용능력, 수학, 과학과 사회, 과학, 사회, 외국어, 체육, 건강/음악/미술공예가 있다. 초·중학교 필수 과목별 시간 배당 기준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특정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른 과목의 학습 시간을 줄여서 국어(영어)나 수학 과목의 주당 시수를 늘일 수 있으나, 반드시 학교장의 검토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7학년과 8학년은 다음의 선택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수학, 읽기, 쓰기, 과학, 사회, 미술, 연설, 기악이나 성악, 외국어, 컴퓨터/기술교육, 농업과학 입문, 가족과 소비자학 입문, 키보드 입문, 기술 교육 입문, 커뮤니케이션, 모듈 기술, 구조법, 제조 기술, 수송 기술 등이다. 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제정하고 초·중등 교육위원회가 인준한 교육과정과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주에서 제시한 졸업 규정을 보면, 국어(영어), 수학, 과학, 사회, 건강교육, 체육, 선택과목에서 과목별로 단위나 교과를 제시해 주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수준 교육과정 사례는 루이지애나 맹학교(Louisiana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http://www.lsvi.org>, 2010). 루이지애나 맹학교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약 70%의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통학을 하고 있다. 또, 이 학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기능뿐만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1권 3호)

아니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 전체 시각장애학생들에게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루이지애나 맹학교 교육과정 편제

중등 과정 교과	추가적인 교육과정
국어(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체육, 컴퓨터교육, 음악, 건반악기 수업	방향정위와 이동기술, 가정생활/독립생활, 점자, 신체적응 교육, 학습 기술, 의사소통 기술, 저시력 보조기구, 읽기, 개인적/사회적 적응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 자체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 2009), 루이지애나 맹학교와 같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시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루이지애나 맹학교의 경우도 주에서 제시하는 표준 과목뿐만 아니라 방향정위와 이동기술, 가정생활/독립생활, 점자, 신체적응 교육, 학습 기술, 의사소통 기술, 저시력 보조기구, 읽기, 개인적/사회적 적응 등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의무교육 기간은 5세부터 16세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학교과정별 및 단계별로 교과 수가 차이가 있지만 국가 수준에서 14개의 교과를 편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인 3단계와 4단계는 2007년에 개정되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인 1단계와 2단계는 2009년 현재, 영국 교육과정평가원(QCA;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에서 막바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박순경 외, 2009).” 주요 1단계(key stage 1) 및 주요 2단계(key stage 2)의 필수 과목(compulsory subjects)은 다음과 같다. 핵심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과학이 있으며, 기본 과목으로는 미술과 디자인, 민주시민, 디자인과 기술, 지리, 역사, 정보통신기술, 음악, 체육, 개인·

사회·건강교육, 현대 외국어(2단계만 해당)가 있다. 그리고 이 외에 종교교육이 있으나, 학부모는 자녀가 종교교육을 받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 또, 각 학교는 특정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고유의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선택 과목을 통해 실행한다. 즉, 학교에서는 필수 과목 외에 여러 교과를 주제별로 묶어서 선택 과목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성교육이나 초등 현대외국어 등이 있다.

주요 3단계의 과목에서는 핵심 과목으로 영어, 수학, 과학이 있으며, 기본 과목으로 미술과 디자인, 민주시민, 디자인과 기술, 지리, 역사, 정보통신기술, 현대외국어, 음악, 체육,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 종교교육의 14개 교과가 편제되어 있다. 중등과정에서도 주요 1, 2단계처럼 각 학교는 특정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고유의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선택 과목을 통해 실행한다. 즉, 디자인과 기술, 현대외국어는 주요 4단계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고, 미술, 디자인과 기술, 인문, 현대외국어가 선택과목 영역으로 편성된다. 학교에서는 필수 과목 외에 여러 교과를 주제별로 묶어서 선택 과목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경제, 환경교육, 정치 및 국제사회의 이해, 유럽의 역사, 문화, 사회적 측면 등을 주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외에 법령 교과와 성교육, 직업교육 등이 있는데, 직업교육은 2004년도부터 주요 4단계의 필수과정이 되었으며, 학부모는 자녀가 종교교육을 받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 주요 4단계의 과목으로는 민주시민, 영어, 정보통신기술, 수학, 체육, 과학, 개인·사회·건강·경제교육, 종교교육의 8개 교과가 편제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수준 교육과정 사례는 로얄 맹학교(Royal School for the Blind)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http://www.rsblind.org.uk>, 2010). 로얄 맹학교는 영국 리버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각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감각장애 및 중복장애를 가진 2~19세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에 맞추어 구성하되, 학생들의 감각능력과 학습능력을 고려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me)에 의해 운영된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로얄 맹학교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 편제	추가적인 교육과정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이동기술, 자립기술,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

로얄 맹학교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역사, 지리, 음악, 미술 등의 과목들이 편성되지만, 국가 교육과정 과목 이외에 이동기술이나 자립기술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개인적/사회적 적응능력, 언어 및 읽기·쓰기 능력, 수학, 세계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신체발달과 창의력 개발 분야들을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기능시력과 이동기술 교육 등을 장애에 따른 추가 교육과정으로 채택·운영하고 있다. 초등 과정에서는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과제의 세분화와 개별 학습 프로그램과 집단 수업 등을 통해서 개별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승마,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 이동기술, 자립기술 등을 추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등 과정에서는 초등 과정과 같이 국가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도 학생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로얄 맹학교에서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과목별 편제나 운영에 있어서 학교 수준에서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국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교육과정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의 역할만 하고, 각 과목의 수업시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권장하는 주당 최소 시수는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 얼마만큼의 시수를 부여할 것인지는 단위 학교 재량(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 2008; 박순경 외, 2009)” 이기 때문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특정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추가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2008년 3월 고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문부과학성, 2008)을 보면, 일본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총칙과 교과 교육과정 및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과에서 보통교육에 관한 각 교과와 전문교육에 관한 각 교과로 분류되며, 도덕이 편제되지 않는다.

교육과정 편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생활, 음악, 미술, 가정, 체육의 교과와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으로 구성되며, 중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가정, 외국어의 교과와 도덕,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인 학습시간은 교과 외의 횡단적·종합적인 학습이나 탐구 학습, 학생의 흥미·관심 등에 근거하는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한국의 현행 재량활동 시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고등학교는

보통교육에 관한 교과에서는 국어, 지리역사, 공민, 수학, 과학, 보건체육, 예술, 외국어, 가정, 정보의 교과로, 전문교육에 관한 교과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경우 한국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시간배당을 보면, 한국의 현행 교육과정처럼 학년별, 교과별로 표준수업시수가 있어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문부과학성, 2009)에서의 교과 및 교육활동 편제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교육과정 편제에 준하여 편성하되, 장애유형이나 학교급별과 상관없이 ‘자립활동’이 추가된다. 또, 고등학교 전문교육 교과에서 추가적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교과가 구성되어 제공된다.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과는 다른 별도의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시되고 있다. 즉, 초·중학교는 생활,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교육과정이 각 교과별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보통 교육에 관한 교과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보건체육, 직업·가정, 외국어, 정보가 각 교과별로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교육에 관한 교과로는 가정, 농업, 공업, 유통 서비스, 복지의 교과가 편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수준 교육과정 사례로 쓰쿠바 맹학교(쓰쿠바대학부속시각특별지원학교)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http://www.nsfb.tsukuba.ac.jp>, 2010).

<표 5> 쓰쿠바 맹학교 초·중등부 교육과정 편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제	비 고
초등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생활, 음악, 미술, 가정, 체육,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 자립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제 • 자립활동: 자립활동, 점자교육, 약시교육, 보행지도, 일상생활 기술, 정보처리
중학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가정, 영어, 도덕,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 자립활동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생활, 음악, 미술, 가정, 체육의 교과와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의 교과 및 교육활동과 자립활동으로 편제되며,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가정, 영어의 교과와 도덕,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의 교과 및 교육활동과 자립활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초·중등부 자립활동의 경우 시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심신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편제되어, 자립활동, 점자교육, 약시교육, 보행지도, 일상생활기술, 정보처리의 세부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과와 음악과, 침구수기요법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편제 및 운영하고 있다.

4. 호주

호주의 경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주 수준의 교육과정과 같은 형태로 보고 뉴사우스웨일즈 주(NSW)의 교육과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는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법 1990’이며, 학교 교육과정은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그리고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과 기술, 인간사회와 환경, 창조예술과 실용예술, 자기개발·건강·체육을 핵심학습영역으로 삼으며, 이에 속하는 교과목들이 매 학년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 교육에서는 7~10학년까지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인간사회와 환경, 외국어, 기술과 응용, 창조예술과 실용예술, 자기개발·건강·체육을 핵심학습영역으로 제시하며, 이 8개 핵심학습영역 중 SC(School Certificate: 10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인증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8개의 중학교 핵심학습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SC 비응시자에게는 6개의 교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과목으로 최소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HSC(Higher School Certificate: 고등학교 수료증) 응시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주에서 결정한 일반 교과들은 매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외에 주에서 제시하는 교과 교육과정 및 편제와 관련된 지침으로 “제14조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1) 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부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16조 추가 교과목과 활동에서 한 학년의 총 활동은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나 기타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에 제한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교과목이

나 다른 활동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는 조항, 그리고 “제17조 추가적인 공립학교 교육과정 필요조건에서 (1) 장관은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교육과정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는 등의 조항이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추가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과 편제에 학교의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즉, 주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과 교과를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주 교육과정 지침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수준 교육과정 사례는 ST. Edmund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http://www.stedmunds.nsw.edu.au>, 2010). ST. Edmund 학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 있는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증을 포함한 광범위한 장애를 가진 7~12학년 과정의 남녀공학 중등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ST. Edmund 학교 교육과정 편제

학년	교육과정 편제	기타 추가적인 교육과정 편제
7학년, 8학년 (단계 4)	영어, 수학, 과학, 역사/지리, 프랑스어, 음악, 시각예술, 컴퓨터 활용능력, 개인개발/건강/체육, 기술, 스포츠/일반활동, 적응 기술, 점자, 종교 교육, 도서관 활용교육	생활기술,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적응기술, 점자교육, 이동기술) 등
9학년, 10학년 (단계 5)	영어, 수학, 과학, 호주역사/호주지리, 창작미술, 산업기술(목재), 식품 기술, 개인개발/건강/체육, 적응기술, 종교교육, 점자, 직업교육 및 컴퓨터 활용능력	
11학년, 12학년 (단계 6)	주요 학습 영역 영어, 수학, 과학, 창작미술, 직업 및 지역사회, 종교교육, 개인개발/건강/체육	

ST. Edmund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핵심학습영역을 기준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과목명을 변경하거나 추가 교육과정을 편제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예컨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돕는 적응기술(Adaptive Technology)이나 점자교육, 직업교육, 이동기술 등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호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교육과정

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정 선택 및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ST. Edmund 학교 역시 호주의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정책에 따라 학생들에 대해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한국

최근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2007년에 고시하여 2008년부터 초·중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과 연이어 개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으로 전환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시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이어 개정을 하여 2008년 고시된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을 현행 교육과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개정 교육과정과 연동하여 2010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되며,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편제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이 있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편성되며,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다.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과목이 있으며,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편제되어 있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통합되어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편성·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 교육과정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일부 ‘수정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직업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타 운영 방법 등에 있어서 앞에 제시한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기본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하며, 교과는 우리들은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직업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정의 전문·직업 교과에는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시각 디자인, 의료, 직업과 생활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수준 교육과정 사례는 S 맹학교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S 맹학교는 초·중등 과정의 시각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S 맹학교 교육과정 편제(2010년 기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제		비고
초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재량활동, 특별활동, 치료교육활동(5~6학년)		1~4학년의 '치료교육활동'은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삭제로 미편제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재량활동, 특별활동, 치료교육활동(8~9학년)		7학년의 '치료교육활동'은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삭제로 미편제
고등학교	인문반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일어, 교양, 재량활동(10학년), 특별활동, 치료교육활동		'재량활동'은 10학년만 편제
	이료반	국민공통 및 일반선택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일어, 교양, 재량활동, 특별활동, 치료교육활동	
		전문·직업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침구, 전기치료, 한방, 진단, 이료임상, 실기실습	

단위 학교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에 따라 S 맹학교의 경우도 국가 수준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들을 모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수 또한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료반의 경우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전문·직업 교과들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이미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에는 '치료교육활동'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특성에 다른 추가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연차적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치료교육활동’이나 재량활동 등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예컨대,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인 보행훈련, 점자지도, 일상생활훈련 등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한시적인 교육과정 편제 영역인 ‘치료교육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인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인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있었던 ‘치료교육활동’이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취해진 조치로,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는 2011년 이후부터는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은 재량활동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IV. 결 론

국가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및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공적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중앙집권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시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의 반영은 국가 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및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시각장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서의 반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나 과목이 국가(주)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나, 학교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제시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모두 국가 수준 교육과정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면에서 그렇지 못한 한국의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교육은 탈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국가 수준보다는 주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집권화되어 운영·관리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미 연방 정부의 통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주)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주) 차원에서 정하는 교과목과 시수가 확정적으로 요구

되는 경우보다 각 학교가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시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둘째, 영국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국의 학교에 대해 표준 교육과정(standard curriculum)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주)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수준에서 과목별 편제나 운영 등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각 학교에 대부분의 자율권을 주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다. 셋째, 일본의 경우 국가 수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 및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은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절대기준인 동시에 최저기준으로서 모든 학교 교육과정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주)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는 교과 수업의 주교재를 비롯하여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는 편이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른 국가에 비해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호주의 경우는 교육과정 개정이 주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각 주의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으로 통합하여 일치해 나아가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주)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단위 학교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이라는 바탕 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재량활동 및 시간 운영의 범위가 비교적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형의 교육 시스템하에서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구속성을 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이 정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자율성 측면에서 국가(주)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편제와 시간배당 및 시간운영 등에 대한 관련지침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국의 국가(주)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시각장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의 교과 및 교육활동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루이지애나 맹학교의 경우 주에서 제시하는 표준 과목뿐만 아니라 방향정위와 이동기술, 가정생활/독립생활, 점자, 신체적응 교육, 학습 기술, 의사소통 기술, 저시력 보조기구, 읽기, 개인적/사회적 적응 등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영국의 로얄 맹학교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에 맞추어 구성하되, 기능시력, 이동기술, 자립기술, 승마,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 등을 추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도 학생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셋째, 일본의 쓰쿠바 맹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과 및 교육활동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심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자립활동’이 편제되어 있었다. 이 자립활동의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자립활동, 점자교육, 약시교육, 보행지도, 일상생활기술, 정보처리 등이 있었다. 넷째, 호주의 ST. Edmund 학교의 경우 주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핵심학습영역과 함께 적응기술, 점자교육, 직업교육, 이동기술 등의 추가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었다. 다섯째, 한국의 S 맹학교의 경우 국가 수준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었다. 장애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연차적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치료교육활동이나 재활활동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는 2011년 이후부터는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보행훈련이나 점자교육,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구화와 수화, 청능훈련, 언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편제나 시간 운영 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범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별도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지나친 분리를 초래할 수 있고, 장애에 따른 기능중심주의 교육으로 기초·기본 학습 능력 결여나 학력 저하의 문제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적절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편제와 운영은 별도의 교과 신설이나 편제보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과 재활활동이 통합되어 편제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미(2009)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자율성 규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영역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의 구조가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데 효과적인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점이나 “우리나라의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교과의 편제를 위임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성과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홍후조, 2002)”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국가 수준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러한 교육을 요구하지 않은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학교에 위임하기에는 현재 한국의 특수학교(급) 현실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제를 단위 학교(급) 수준에서 새롭게 신설 및 편제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학교 단위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편제나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특수교육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재량활동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초등학교 급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교과 외의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승미, 2009)”에, 이를 통해 다양한 특수교육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현행 재량활동 시간은 개별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되어 있지 않고, 치료 지원과 같은 특수교육 요구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이나 범교과 학습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학급 단위 시간 운영 제시 방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시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 실정 및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수교육 요구의 반영, 교육과정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규에 규정되어 지원되는 ‘치료지원’의 교육과정에서의 편성·운영 등에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이나 활동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동향인 ‘일반학교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과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 외 활동’으로 그 성격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규정되는 교과 및 활동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자료) 발간 및 지원, 운영 시간 배당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설계에는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타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는 전체 장애 학생들의 학력의 도달치와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의 하나인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과는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사례(I, V, VI) 미국, 호주, 종합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 (2008).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I, II, VIII) -미국, 영국, 총론 비교-**.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선 (2007). 호주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퀸즈랜드 주 Middle Ridge State Primary School을 중심으로-. **교육논총연구**, 28(1), 79-101.
- 김진숙 (2006). 제7차 교육과정의 문서 체재 개선 연구. **교육과정연구**, 24(1), 121-151.
- 박순경 외 (2009).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소경희 외 (200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II) -주요국의 학교 교육과정·교육평가 운영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호 (2004). 호주의 교육과정 개정정책에 대한 일 고찰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4(1), 245-267.
- 이덕순 (2008). **개정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비교 분석**.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분석 연구 전문가 포럼 자료집.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이덕순 (2009).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일반학교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성 고찰: 총론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25(3), 91-123.
- 이덕순 (2010a).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5(1), 41-60.
- 이덕순 (2010b). 한국과 일본의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비교 연구. **시각장애연구**, 26(2), 93-116.
- 이미숙 외 (2008). **국가교육과정의 체제 혁신 방안 연구(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미 (2009).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자율성 규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7(2), 83-112.
- 정영근 (2006).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론 -국가 교육과정 체제하에서의 그 실체 논쟁을 중심으로-**. 2006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홍원, 성열관 (2009).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수 연한 혁신 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7(2), 113-136.
- 허경철 외 (2005a). **세계 각국의 최근 교육동향 및 교육과정 국제 비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 외 (2005b). **학교 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III)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적용 과정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 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학연구**, 40(1), 177-195.
- Louisiana Department of Education(2008). *Louisiana Board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ouisiana Handbook for School Administrators*.

Smith, A. W. (1991). *A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llege Reading Associ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Overview.* U.S. Department of Education September 2005.

<http://curriculum.qcda.gov.uk/>

http://www.austlii.edu.au/au/legis/nsw/consol_act/ea1990104/

<http://www.bl.sc.kr/>

<http://www.doe.state.la.us/lde/bese/home.html/>

<http://www.lsvi.org/>

<http://www.mext.go.jp/>

<http://www.nsfb.tsukuba.ac.jp/>

<http://www.rsblind.org.uk/>,

<http://www.stedmunds.nsw.edu.au/>

A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ation
(state)-level curriculum and school-level curriculum:
Focusing on reflection of special education needs
(based on school for the visual impaired)

Lee, Deok-soon

Gwangui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a nation (or state) -level curriculum and a school-level curriculum focusing on the example of schools for visual impairment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has its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i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ionship of nation(state)-level curricula with school-level curricula in each country, the courses and the organization of academic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nation (state)-level curricula in 5 countries such as Korea, the U.S, the U.K, Japan and Australia and the curricula of five schools for visual impairment selected by the relevant country and state. Such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a plan that can reflect the needs on speci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impairment in organizing nation-level curricula and school-level curricula.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flection of the needs for speci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impairment in each country over the world has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current curricula for special education in Korea which have no structure that can realize the needs for speci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impairment, regardless of the type, when compared to Japan case where the activities or courses necessary for students requiring special education are organized in its nation(state)-level curricula or the U.S, the U.K and Australia's cases where the nation(state) -level curricula are organized for securing the schools' discretion of operation; secondly, the additional curricula of special

education must be designed to reflect the needs for speci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impairment; third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uch additional curricula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impairment can be operated through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course,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new course or organization.

Key Words

: Curriculum in the world, Nation-level curriculum, School-level curriculum, School for visual impairment